

정 관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우리회사는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이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CHANGWON COUNTRY CLUB CORPORATION’이라고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우리회사는 주주의 권익과 친선을 도모하며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
2. 관광객 이용시설업
3. 관광객 편의시설업
4.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조사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6. 조림업 및 조림매매업
7. 농작물 재배업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우리회사의 본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산 50에 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각지에 지점,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우리회사의 공고는 창원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남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5 조 (주주의 자격 및 권리의무)

- ① 우리회사의 설립시의 주주는 창원개발주식회사(창원 컨트리클럽)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창원C.C 회원 주주제 인수추진 위원회가 정한 출자금을 납입한 자에 한한다.

- ② 위 출자금은 이사회 결의로 주금과 골프장 이용 보증금으로 분리할 수 있고, 보증금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증자시 기존의 주주가 인수하지 않은 신주의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④ 주주회원이 아닌 권리자에 대한 골프장 이용조건 (예약 및 이용료 등)은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회원과 차등을 둘 수 있다.

제 6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우리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486주로 한다.

제 7 조 (1주의 금액)

우리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만원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발행주식수와 권면 주금액의 조정을 위하여 그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9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우리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壹주권으로 한다.

제10조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수)

우리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수는 120주로 한다.

제11조 (주금등의 납입 및 지체)

- ① 주주 또는 주식인수인이 주금 등의 납입을 지체할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 완료일까지 그 금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 또는 주식인수인이 회사에서 정한 날짜까지 주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의 변경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주주 또는 주식 인수인이 입게 될 회원권 상실 등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신주의 발행 및 신주 인수권)

- ① 주주는 장래에 발행할 신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격
 3. 주금의 납입기일과 주식의 인수 방법
 4.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
- ③ 신주 인수자에게는 실권에 관한 사항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식의 양도)

- ① 주식의 양도는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으며, 회원권(이용권) 및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위 제①항의 이사회 승인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우리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 (명의개서)

- ①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우리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권
 2. 보증금 양도증서
 3. 회원권 양도증서
-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위 제1항에서 정한 절차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우리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할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6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발행,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우리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우리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① 주주, 등록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주소, 성명과 인감 우리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주, 등록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 거주소 또는 한국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대리인을 정하여 우리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미리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우리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수수료)

우리회사는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 등 필요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주주명부의 폐쇄)

① 우리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 주주총회의 일까지 사이에,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에는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 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고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20조 (주주총회의 종류 및 소집)

- ①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우리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회계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주주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2주일전에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일자에 신문광고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우리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청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그 대표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3조 (의결사항 및 정족수)

- ①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 ② 다음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우리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1/2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1/2 이상의 양수
 3.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탁,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체결변경 또는 해약
 4.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5. 자본의 감소
 6.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회계년도내 동일 건에 대한 자산 총액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7. 합병, 분할, 해산, 청산과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24조 (의결권)

- ①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 ②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사전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주주에 한함)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 1일전 17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④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임장에 수임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동봉하여 주주총회 개최 3일전 17시까지 우편 접수하여야 하고, 수임자의 직접접수는 불가하며,

인감증명서가 동봉되지 않거나 수임자가 주주총회 당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결권은 무효로 하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한다.

제25조 (회의록)

주주총회 회의록은 회의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이사가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제 4 장 임 원

제2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우리회사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10인 이하

단, 상근이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둘 수 있다.

3. 감사 2인

제27조 (임원의 자격)

- ① 임원은 회원인 주주의 자격이 상실되면 그 임기도 만료되어 당연 퇴직한다.
- ② 우리회사의 임원되는 기타자격은 회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임원의 선임)

- ① 우리회사의 임원인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대표이사는 주주 50인~60인, 이사와 감사는 주주 30인~40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단, 추천인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쌍방 모두 추천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임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주주회원은 임원선출이 있을 주주총회 개최일의 2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명부를 주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2주간 이상 공고한 후 정기 주주총회일 2주간전까지 이사 입후보자 명단과 위임장 등을 각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회사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대표이사가 봉인한 사전투표함을 주주총회일 2주전부터 주주총회 개최 1일전 17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 ⑤ 임원 후보자가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출석한 주주 5분의 1이상 이의가 있는 경우 총회 결의에 따라 찬반투표를 할 수 있다.
- ⑥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끝난 때는 그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④ 임원의 사퇴 등으로 인하여 5분의 1이상 임원의 결원이 생긴때에는 가장 먼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 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 (임원의 업무 및 의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③ 감사는 우리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고 및 시정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④ 우리회사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 (보수와 퇴직금)

비상근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상근 임원의 보수와 퇴직위로금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2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 (의결사항 등)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그에 제출할 의안
2. 중요한 사업의 계획, 수정 및 심의
3.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
4. 회사의 정관 개정안 심의
5.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심의
6. 소송제기와 화해
7. 주식의 양도에 대한 심사 및 승인과 신주의 발행 및 처리
8. 자금의 차입 및 자본 증가에 관한 사항
9.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10. 주주의 골프장 이용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11. 주주들의 진정, 청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처리
12. 주주총회의 위임사항과 정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13. 회원가입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
1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15. 기타 우리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

제34조 (이사회 결의)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사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이사회내 분과위원회)

- ① 이사회는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7조 (주주의 청원권)

모든 주주는 주주 5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아래사항에 관한 시정을 이사회에 청원할 수 있고, 청원서를 제출받은 이사회는 3일 이내 사실 조사에 착수하여, 청원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회사 관계자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청원 회원의 대표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모든 주주가 알 수 있도록 청원내용과 그 시정된 결과를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주주의 권리 보호, 특히 예약의 불공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주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식음료 등에 대한 질의 저하, 직원의 불친절 등)
3. 우리회사 임원의 불법부당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 6 장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제38조 (선거관리)

- ① 우리회사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게 처리하게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규로 주주회원이 되거나 재취득하여 주주회원이 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자 중 이사회가 지명하는 3인, 주주회원 중 자원자 4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임원의 선출이 있을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전에 구성하여 주주총회 종결일에 해산되는 비상설 기구로 한다.

단, 주주총회 종결 후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등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위원회는 존속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당해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 후 당해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 ⑥ 투표방법과 투표효력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이사회에 승인 후 시행한다.)

- ⑦ 위원회의 직무범위, 기타사항은 회사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계 산

제39조 (회계년도)

우리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회사 설립년도는 설립일로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① 우리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4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부속 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과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2주간 전부터 우리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월 손실금은 보전

2. 법정준비금의 적립
3. 임의적립금
4. 임의상여금
5. 주주배당금
6. 후기이월금

제42조 (이익배당)

이익 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정관은 200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시 주주총회)

우리회사는 창원개발주식회사 소유의 골프장(창원 C.C)을 우리회사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조 (인수추진위원회)

- ① 우리회사에는 부칙 제2조의 주주총회일까지 회원주주제 인수추진위원회를 둔다.
- ② 위 주주총회일까지 운영위원회 및 선거관리 위원회의 권한을 회원주주제 인수추진위원회의 이사회가 대행한다.
- ③ 위 인수추진 위원회 위원은 우리회사의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4조 (임원의 선임절차)

- ① 회사 설립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의 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만료된 이사와 운영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주에게 통지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 ③ 이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주주는 대표이사, 상근이사, 비상근 이사중 택일하여 주주 30인 만의 추천, 또는 운영위원회 추천을,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 30인 만의 추천, 또는 이사회에의 추천을 받아 위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로부터 2주 이상 입후보자 명부를 주주가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한 후 임시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각 후보자 명단과 투표용지를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⑤ 회사 설립시 선임하는 이사는 상근, 비상근의 구분을 두지 아니하며, 이사의 수도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6인(대표이사 포함)으로 한다.
- ⑥ 부칙 제2조의 주주총회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는 6인으로 하되 상근이사는 두지 아니한다.

제5조 (임원등의 임기)

부칙 제2조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등의 임기는 2002년 정기 주주총회일에 만료된다.

제6조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전에 창원C.C 회원주주제 인수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등)

우리회사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제8조 (개정)

본 정관 개정조항은 개정을 의결하는 주주총회때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과 같이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서명날인하다.

발 기 인 장 권 현 (390805-1122521)
마산시 산호동 16-5번지

발 기 인 김 용 준 (421103-1912819)
창원시 대원동 80 대원대동2차아파트 202동 1002호

발 기 인 황 수 길 (440901-1110125)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014 선경아파트 301동 1302호

발 기 인 조 현 종 (460328-1101136)
마산시 문화동 12-3 대주빌라 102호

발 기 인 양 광 응 (411005-1850511)
창원시 반림동 3-1 현대아파트 107동 1303호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정관은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정관은 200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정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이사회 결의사항」 등은 당사 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까지 개정 전 정관을 적용한다.
- ②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과 관련된 사항은 제8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개정 전 정관을 적용한다.
단, 개정 전 정관 제40조(의결사항 등) ①항 1호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정관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정관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정관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감사 임기와 관련된 규정은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정관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정관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임원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은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이사 및 이사부터 적용한다.